



## 정신질환 보호입원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범위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4. 28. 선고 2021가단233135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자·타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나 이에 대한 개연성 및 이를 지지할 구체적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을 결정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를 기각 하였다.

피고는 ○○병원의 원장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한다)에서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7. 7. 8.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부모와 함께 내원하여 진료와 면담을 시행하였는데, 면담이 끝난 후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당일 입원조치 하였고 2017. 9. 14.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조치 및 외래진료를 통한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4회의 외래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

원고는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재발되어 2018. 5. 1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첫 입원 당시와 유사한 증상이 상당하여 피고는 다시 입원 치료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입원 치료 중이던 같은 해 7. 3. 원고는 소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퇴원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입원 당시 자·타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또는 그에 대한 높은 개연성 및 이를 지지할 구체적 사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두 차례나 정신건강복지법 및 동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위법한 강제입원을 결정한함으로써 이 사건 강제 입원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강제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 법무법인은 ① 원고는 입원 당시 입원필요성이 존재하고, 자·타해 위험성 등이 존재하여 보호입원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피고의 결정만으로 원고가 입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입원 당시 타 의료기관의 입원적정성 평가를 거쳐 입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입원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두 차례의 입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



자체에 퇴원 또는 처우 개선 심사를 세 차례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손해를 인지한 지 3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원고의 입증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당시 원고에게 자·타해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 또는 그에 대한 높은 개연성 및 이를 지지할 구체적인 사정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두 차례나 정신건강복지법 및 동 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위법한 입원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의 건강과 보호자들의 평안을 지키는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나 법적 분쟁은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 실시한 의료행위를 기록해둔 여러 진료기록들의 중요성은 수회 강조해도 부족하며, 의료행위중 환자관리에도 더 심혈을 기울여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환자와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권 대표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kklee@lkpartner.co.kr](mailto:kklee@lkpartner.co.kr)